

KOLAS 시험항목 예외인정 소명 자료

1. 「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」(이하 시행세칙) 제11조제2항에 의거 성능인증 신청제품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한국인정기구(KOLAS) 인정 시험기관을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2. 제출자는 전문기관에 제출한 “KOLAS 시험항목 검토보고서”가 시행세칙 제6조 제10항 내지 제2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, 성능인증 신청 시 반려 또는 인증 취득 이후에도 성능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
- 아 래 -

신청제품 시험항목 세부내용

항목	인정분야	규격번호 (Test Method)	규격명 (Test Description)	비고 (Range)	KOLAS 기관
①	입자크기	KS F 3888-1	실외체육시설-인조잔디	-	유
②	비중	KS F 3888-1		-	
③	내열성	KS F 3888-1		-	
④	내충격성	KS F 3888-1		-	
⑤	중금속	KS F 3888-1		-	
⑥	총휘발성 유기 화합물	KS F 3888-1		-	
⑦	다환 방향족탄화수소	KS F 3888-1		-	
⑧	중금속 용출	KS F 3888-1		-	
⑨	프탈레이트계 가소제	KS F 3888-1		-	
⑩	항균시험	KCL-FIR-1003		항균력 시험방법	
⑪	유기함량(TGA)	method 11	FIFA Quality Programme for Football Turf	-	무
⑫	UV시험	method 10		무	
⑬	충격흡수성	KLG-001	K리그 그라운드 공인제도 품질규격서	-	무
⑭	부피밀도				

항목별 KOLAS 인정기관 유무확인 결과

①~⑨ 항은 KCL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KOLAS 성적서를 제출함. 한국인정기구 KOLAS 홈페이지(www.kolas.go.kr) 공인기관 검색 결과 ⑩~⑭ 항의 KOLAS 인정기관은 존재하지 않음.

성적서 발행 시 비KOLAS 항목이 포함될 경우 전체 시험성적서에 대한 KOLAS 시험 성적서 발행이 불가하여 비KOLAS 성적서로 제출함.

2020 년 10 월 22 일

신청기업 : (주)디와이에코

대표이사 : 권 금 순



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 귀하